

이사회운영규정

주식회사 서연이화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서연이화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(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이사회의 결의로 독립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의 2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(조문 신설 2021.03.11)

제 6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위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소집통보는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(개정 2021.03.11)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이사회 내 위원회도 이와 같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
- (1)-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(7) (삭 제)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·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4)-2 (삭 제)
- (4)-3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 대행자 선임

- (4)-4 이사회 의장 유고시 이사회를 주재할 의장 선임
- (5) (삭 제)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1)-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(1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3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
- (14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5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6)-2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9)-2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0)-2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(11)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1)-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2) 이사의 타회사 이사 겸임에 대한 승인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0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

사로 구성한다.
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0조 의 2 (감사위원회)

- ① (삭 제)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감사실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경영감시체계를 구축한다.
-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 (삭 제)

제 11 조의 2 (임직원 등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의 2 (임원 및 고문)

- ① 회사는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 등의 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임원과 고문은 회장이 선임하며,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, 회장은 매년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성과격려금 등 일체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월 1회 이상 제1항의 임원들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독립이사의 활동지원 등)

독립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<부 칙>

이 규정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<부 칙>

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부 칙>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 칙>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 칙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4조, 제5조, 제10조의2, 제1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2026.03.26 신설)